

2026-07-08

(26-4879)

페이지: 1/3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프랑스어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프랑스 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2. 담당기관: 생태전환·국토정비·교통·도시·주택부 주택·도시계획·경관국 DGALN / DHUP / QC4 Tour Séquoia 1 place Carpeaux 92055 LA DÉFENSE CEDEX
3. 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], 제 5.6.2 조 [], 제 5.7.1 조 [], 제 3.2 조 [], 제 7.2 조 [], 기타:
4. 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- 기타 기기: (HS 코드: 73218)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기술 시스템의 구성요소 또는 기술 시스템 전체: - 건물, 건물 일부 또는 그 부지에 통합되어 있고, - 난방, 냉방 또는 위생용 온수를 위하여 건물의 기능에 기여한다.
5.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신축에 적용되는 난방 또는 온수 생산 설비의 설치에 관한 환경 성능 요건에 관한 명령 (5 페이지, 프랑스어)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6/TBT/FRA/26_03521_00_f.pdf
6. 내용: 본 명령안은 다음을 규정한다: 연료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의존할 가능성을 삭제한다(2022 년 1 월 5 일자 명령 제 2022-8 호에서 비롯된 건축·주거법(CCH) R. 171-13 조의 개정);

신축 건물에 대하여, 온실가스 배출량이 79 g/kWh 를 초과하는 보일러의 설치 금지를 도입하며, 이는 전기의 규제 배출 기준에 해당한다;

예비용으로 사용되는 시스템과 열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준수에 대한 면제를 규정한다. 특별한 토지 또는 소유권 지역권으로 인해 본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건물도 이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본 명령안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2024 년 4 월 24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(EU) 2024/1275(DPEB)의 제 7 조 및 제 11 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. 이들 조항은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2028 년부터, 그 밖의 건축물군의 경우 2030 년부터 신축 건물이 현장에서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.

- 7. 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** 본 명령안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2024 년 4 월 24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(EU) 2024/1275(DPEB)의 제 7 조 및 제 11 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들 조항은 신축 건물이 공공기관의 건물의 경우 2028 년부터, 그 밖의 건축물군의 경우 2030 년부터 현장에서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.

또한, 프랑스 정부는 2026 년 4 월 사용의 전기화를 위한 국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이는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:

탈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국가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,

가계, 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에너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며,

경제의 전환을 지속함으로써 프랑스의 재산업화에 기여한다.

이 계획은 특히 조치 5 "신축 건설에서의 가스 종료"를 통해 건물 건설에 대해 전개된다. 이 조치는 주택의 경우 2027 년 1 월 1 일에 시행되며, 3 차 부문 건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된다. 통보된 본 명령안은 이 조치의 규제적 구현에 해당한다.

끝으로, 본 명령안은 신축 건물이든 개보수 중인 건물이든 연료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설치 가능성을 삭제한다. 이 규정은 2035 년까지 연료유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저탄소 전략에 부합한다.

보다 일반적으로, 이들 조치가 추구하는 공익 목적은 프랑스 탄소 배출량의 약 16%를 차지하는 건물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; 환경 보호

- 8. 관련 문서:**

-

- 9. 채택 예정일:** 2026-12-01

시행 예정일: 2027-01-01

- 10. 의견 제공**

의견 마감일: 2026-09-06

통보일로부터 60 일 [X]

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
--